



# 보건복지부



수신 수신자 참조  
(경유)

제목 요양병원, 요양시설 대상 연명의료결정제도 안내 협조 요청

1. 귀 부서의 협조에 감사드립니다.
2. 우리부는 「연명의료결정법」에 따라 국민의 '존엄한 삶의 마무리'를 위하여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치료효과가 없는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연명의료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
3.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이용자(가족 포함) 및 종사자분들을 대상으로 제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해도를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자 합니다.
4. 연명의료결정제도에 관한 내용을 첨부해드리니, 각 협회 및 지자체를 통해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 해당 내용이 공유될 수 있도록 안내를 부탁드립니다.

※ 연명의료결정제도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, 국가생명윤리정책원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(1855-0075, 02-778-7594)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: 연명의료결정제도 안내자료 2부. 끝.

생명윤리정책과장

수신자 의료기관정책과장, 영양보험운영과장

주무관	김은미	보건사무관	윤정희	생명윤리정책과 전결 2024. 11. 19.
				장 윤병철

협조자

시행 생명윤리정책과-3001 (2024. 11. 19.) 접수 의료기관정책과-7178 (2024. 11. 20.)

우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(어진동) 보건복지부 / <http://www.mohw.go.kr>

전화번호 044-202-2621 팩스번호 044-202-3943 / [pure1592@korea.kr](mailto:pure1592@korea.kr) / 대한민국 공개